

2020년도 제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5. 20.(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재화,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75호)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11건(안전번호 제2020-27651호~28797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27651호~27685호는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밴드에서 영화를 제공한 사안임.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밴드에서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회원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어 해당 밴드의 폐쇄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27686호~2773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과 제품키, 크랙파일 등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27732호, 27733호는 블로그에서 중국 영화를 스트리밍 형태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27734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EBS 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27735호, 27736호는 티스토리 이용자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06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20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2,524개의 URL 정보에 관해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0-27793호~30316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20개, 총 2,524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7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5쪽의 기관명, 6쪽의 저작물명, 7쪽의 사이트 주소, 12쪽~13쪽의 밴드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2호 안건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18쪽~26쪽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관련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 B 위원: 같은 생각임. 해당 부분이 공개될 경우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음.
- C 위원: 제2호 안건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D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기관명, 저작물명, 사이트 주소, 밴드명은 비식별 처리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18쪽~26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 중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어도비시스템즈’, ‘월트디즈니’, ‘유니버설픽처스’, ‘넷플릭스’, ‘소니픽처스’,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 등의 대리인이거나 해당 권리자들을 위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람.

- C, D, B, A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20-27651호~28797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711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갈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7651호~2768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밴드는 초정장이 있어야 가능한 폐쇄적인 밴드가 아니라 누구나 밴드명을 검색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게시물을 볼 수 있어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임.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 ‘△△△△△’ 등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안건번호 제2020-27680호 밴드명 ‘☆☆☆☆’도 밴드명만으로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참고로 2020. 5. 18. 개최된 제2020-80회 분과위원회에서 밴드 모니터링 및 심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기 위해 밴드 멤버수가 100명 이하인 사안들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안건번호 제2020-27660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해당 밴드는 다른 공개형 밴드와 다르게 밴드에 로그인을 해야 밴드에 접속해서 게시물을 볼 수 있는 밴드로 보임. 현재 밴드에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아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접속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로 확인하도록 하겠음.

(안건번호 제2020-27660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7660호 밴드명 ‘◎◎◎’의 멤버수는 44명임. 밴드 소개글에는 “■■■ ■■ ■■■ ■■■■■■■■ ■■■■■■■■ ■■■”라고 기재되어 있음.

(안건번호 제2020-27663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7663호 밴드명 ‘△△△△△’의 멤버수는 13명임.

(안건번호 제2020-27663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

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을 업로드한 게시자명은 실명과 전화번호로 되어 있음. 해당 밴드에서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도 많은 영화 저작물을 밴드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안전표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7668호 밴드명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의 멤버수는 20명임. 안전번호 제2020-27668호~27670호는 모두 동일한 밴드에서 동일한 게시자가 업로드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27668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밴드를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20-27668호 밴드 소개글에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불법복제물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 골프 모임을 위해 밴드를 개설한 것으로 보임.

(안전번호 제2020-27671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7671호 밴드명 ‘▶’의 멤버수는 9명임.

(안전번호 제2020-27671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해당 밴드의 멤버수는 현재 9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하였음. 해당 밴드는 누구나 검색하여 접근이 가능한 공개형 밴드이지만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복제물이 다운로드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원 직원이 불법복제물을 다운 및 채증을 하기 위해 해당 밴드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됨.

(안전번호 제2020-27673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7673호 밴드 멤버수는 2명임. 시정권고 대상이 되려면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실이 있어야 함. 밴드 멤버수가 2명이나 1명인 상태에서 보호원 직원이 밴드에 가입하여 멤버수가 3명이나 2명이 되었을 때 시정권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애매하다고 생각함.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에서 ‘available’의 의미가 밴드에 멤버로 가입한 후에서야 전송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음. 또한 제한된 행정력을 소규모 밴드 채증에 투입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음.

(안전번호 제2020-27673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보호원 직원의 밴드 가입 및 탈퇴로 안전번호 제2020-27673호 멤버수는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임.

(안전번호 제2020-27675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7675호 밴드명 '●●●'의 멤버수는 31명임.

(안전번호 제2020-27679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20-27679호 밴드명 '♠♠'의 멤버수는 4명이고, 게시자는 '●●●●'임. 해당 밴드에는 가족 사진이 게시되어 있음. 참고로 밴드를 개설할 때 공개로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음. 해당 밴드가 실제 가족이 밴드 구성원이라면 사적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D 위원: 공중의 이용에 불법복제물이 제공되어 있는 상태로 보임. 불법복제물을 밴드에 게시한 것 자체도 전송에 해당함. 'making available'을 전송이라고 번역하여 착오가 있는 것임. 해당 밴드가 폐쇄되어 있어야 사적 이용으로 볼 수 있음.
- C 위원: 사적 이용은 저작권 제한이 되지 않음. 다만 정책적으로 소규모 밴드까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D 위원: 한정된 행정력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원래 시정권고 제도는 어문저작물이 아닌 디지털 파일로 이루어진 영상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밴드에서 최신 영화들을 제공하고 있음. 이용자들이 얼마든지 검색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밴드 멤버수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음.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27679호 밴드의 다른 게시물을

- 보여주면서)해당 밴드에서 다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C 위원: 밴드에서 불법복제물을 한 개라도 게시하였다면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는 입장임.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27683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7683호 밴드명 '▼▼▼▼▼▼▼▼▼▼'의 멤버수는 3명임.
(안전번호 제2020-27683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밴드를 보여주면서)해당 밴드의 멤버수는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였음.
밴드 내 다른 게시물을 보면 지붕 공사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음.
 - D 위원: 게시자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27684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7684호 밴드명 '◆◆◆◆◆◆◆◆◆◆'의 멤버수는 5명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27651호~2768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밴드 멤버수가 100명 이하인 사안은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밴드에 대한 심의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밴드에 가입된 회원이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27651호~27685호는 가결 3명, 전체위 회부 1명으로 의견이 나뉘었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가결 의견이므로 안전번호 제2020-27651호~2768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27686호~2773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ffice', 오토데스크사의 'Revit', 'Electrical', 'Inventor', 'AutoCAD', '3DS MAX', 'Mechanical', 'Civil 3D',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어도비시스템즈사의 'Dreamweaver', 'Master Collection', 'After Effects', 'illustrator', 'photoshop', 구글사의 'SketchUp Pro', 다쏘시스템사의 'SolidWorks', MAGIX사의 'Vegas Pro', 스테인버그사의 'Cubase', 로버트 맥널 앤드 어소시어츠사의 'Rhino'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총 42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해당 권리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인증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대법원은 이른바 ‘오픈캡처’ 사건에서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안전표를 제시하면서)한편 심의대상 게시물은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자동인증 또는 무설치인 경우도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크래킹 프로그램, 라이선스 키 등의 제공 행위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라고 보기 어렵지만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의 전송에는 해당할 수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27686호~2773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웹하드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과 제품키 또는 크랙 파일 등을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시정권고함이 타당함.
- D 위원: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7686호~2773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7732호, 27733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이용자가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고 있지 아니하는 중국 영화를 스트리밍 형태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27732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영상물을 재생하면서)해당 영상물은 약 1시간 12분 14초 분량이며, 우리말 자막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영화 '☆☆☆☆☆☆☆☆'은 □■□■. □. ■.부터 중국 동영상 사이트 '▲▲▲'에서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0-27733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영상물은 우리말 자막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영화 '☆☆☆☆☆☆☆☆'은 △△△△. △. △△.부터 중국 동영상 사이트 '◇◇◇◇◇◇.◇◇◇'에서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중국 영화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 동영상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가 아닌지?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사이트에서 영화를 임베디드 링크로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27732호, 2773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스트리밍 방식으로 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 해야 한다고 봄.
- B 위원: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7732호, 2773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7734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안전번호 제2020-27734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사이트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실시간 ○○○○ 방송을 올림. 참고로 해당 사이트는 국내 사이트로 방송프로그램 다시보기, 영화 등의 저작물을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게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
(심의대상 게시물의 ○○○○ 실시간 방송과 ○○○○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onair 방송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실시간 방송으로 왕티비와 ○○○○에서 동일한 방송이 나오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신이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아니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대법원은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단순히 에이온미디어의 노래방 서비스를 매개 내지 중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저작물의 복제·전송행위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설시하였는바, 복제·전송자 자신은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마찬가지로 이해완 교수는 “확장된 개념에 의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은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용자가 저작물을 전달,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 내재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뜻하므로, 직접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맥락에서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는 입장임.

한편 시정권고는 ‘전송’을 전제로 하므로 ‘방송’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 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수신자의 이시성을 개념적 징표로 하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함.

- D 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법원 판결에서 복제·전송자 자신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복제·전송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임.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임. 저는 동일한 주체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될 수 있고, 동일한 주체가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면 그 복제·전송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는 의미임.
- B 위원: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 방송은 리피터 개념으로 보아야 함. 실제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클릭하지만 □□□ 사이트로 호스팅이 됨.

- D 위원: □□□ onair 방송 화면과 왕티비 방송 화면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두 화면 사이의 시차는 버퍼링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시정권고 대상에는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로 되어 있고, 저작권법 내 다른 조항에서는 ‘전송’이 ‘공중송신’으로 바뀌었는데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는 ‘전송’이 ‘공중송신’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 또한 시정권고 대상에는 디지털 음성 송신이나 방송이 제외되어 있는데 입법자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임.
- D 위원: 어느 해석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함. 최근에는 변경되었지만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는 ‘공중송신’, 저작권법 제25조 3항에는 ‘전송’이라 되어있었음. 또한 원래 ‘복제·전송’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확산을 차단하고자 시정권고 제도가 만들어진 것임.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시정권고 대상에 방송까지는 고려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다만 영상물이 수반되는 디지털 음성 송신처럼 방송의 개념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 ‘방송’으로 볼 것인지, ‘그 밖에 공중송신’으로 볼 것인지는 교수들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지만 저는 ‘방송’으로 보고 있음. 물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쌍방향성을 방송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음. 유럽 연합에서는 ‘방송’과 ‘전송’의 개념이 수신에 이시성인지 동시성인지로 나뉨. 일방향성인지 쌍방향성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독일에서는 쌍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수신에 동시성이 있으면 방송이라고 보았음. 미국은 독특한 입법 연혁으로 인해 디지털 음성 송신 제도가 있는 것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773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해당 사안은 전송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결 의견임.
- C 위원: 같은 의견임.
- D 위원: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2773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27735호, 27736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안건번호 제2020-27735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티스토리 이용자가 ○○○○. ○. ○○. 국내 방송 프로그램인 '■■■■■■■■' 제668회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무단 제공하면서, 해당 영상물로 연결되는 링크 4개를 함께 제공한 사안임.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들의 링크를 클릭하면 해외에 서버가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됨.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여러 건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고, "◆◆◆◆ ◆◆◆◆ ◆◆◆◆ ◆◆◆◆ ◆◆◆◆ ◆◆◆◆"라고 기재되어 있음. 게시자는 광고 게재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27735호, 2773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시정권고해야 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7735호, 2773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7737호~28797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만화 '기숙학교의 줄리엣 (출판 : 학산문화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7802호는 웹하드에서 [카네다 유스케] 기숙학교의 줄리엣 06' 압축 파일을 18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jpg 파일로 이용 가능함. 해당 어문저작물의 6권은 2018. 9. 7. 출간되었고, 총 14권으로 미완결임. 합법저작물 단권 판매가는 약 2,500원임.
(게임 '블랙 메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27816호

는 2020. 3. 6. 출시된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1,28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게임물의 정품 판매가는 약 20,500원이고, 배급사는 '크로우바 콜렉티브'임.

(음악 '일편단심 민들레야 (가수: 임영웅)'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0-28335호의 음원파일은 2020. 2. 7. 발매된 곡으로 앨범 '내일은 미스터트롯 데스매치 PART2'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멜론 (Melon) 실시간 TOP 100] 2020년 05월 12일'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약 100곡을 이용할 수 있음. 참고로 해당 곡의 원곡 실연자는 가수 '조용필'임.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0-28445호는 국내에서 2020. 3. 5.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내 개봉이 연기된 영화를 웹하드에서 180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미국에서 2020. 3. 6. 개봉하였음. 해당 영상물에는 자체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0-28493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1회~9회'를 1,42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물은 tvN 채널에서 2020. 3. 12.부터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영 중인 총 12부작 드라마임.

(방송 '반의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0-28672호는 웹하드에서 '반의반 1화'를 39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물은 tvN 채널에서 2020. 3. 23.부터 2020. 4. 28.까지 방영한 총 12부작 드라마임.

- C 위원, A 위원, B 위원, D 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PC로 확인하면서) 확인하였으며 모두 불법복제물로 판단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27737호~2879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보임.
- B 위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C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동의함. 다만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7737호~28797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27734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27651호~27733호, 제2020-27735호~2879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20쪽부터 3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7793호~30316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5. 27.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